

농촌협약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6
----------	----

제안연월일 : 2022. 11. .
제안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에 농촌협약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농촌협약 및 농촌활성화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 나. 위탁대상자 : 평창군농촌활성화지원센터(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 다. 위탁사무 : 지역 내 농촌협약 추진 주체의 육성, 지역사회 역량 강화(교육) 지원 등 농촌협약 중간지원조직 사무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시군역량강화사업) 전담
 - 주민, 현장 활동가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사업 지원
 - 완료지구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S/W사업 지원
 - 평창군 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장포럼 등)

관계법령 발취

□ 평창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조례 제2704호,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지역 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평창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평창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농촌협약”이란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군이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간지원조직 의무)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 법령과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군의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법령에서 “위탁해야 한다.”란 강행규정이나 “소관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란 규정을 둔 경우
2. 국가 또는 강원도의 위임사무로서 그 승인을 받은 경우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심의·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하는 경우
4.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계가 없는 경우
5. 해마다 보조 및 지원예산액이 3,000만원 미만으로 제9조제1항의 선정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③ 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